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

(대표발의: 강동오 의원)

의안 번호	24-20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4. 2. .

발의자 : 강동오, 고병준, 권영숙,
권인순, 백남환, 안미자,
오욱자, 채우진, 한선미,
홍지광

1. 제정이유

군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,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상해보험료의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안 제5조)

라. 준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3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
2) 「청년기본법」 제21조

3) 「병역법」 제16조, 제20조, 제22조

4. 조 례 안 : 붙임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6. 기타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입법예고: 2024. 2. 13. ~ 2. 19.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,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,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“군복무 청년 상해보험”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상해보험료의 지원)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, 보험범위, 보험기간, 보장금액,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,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지원대상)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.

1. 「병역법」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(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)
2. 「병역법」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

제6조(준용)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청년기본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53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제21조(청년 복지증진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병역법

[시행 2022. 12. 13.] [법률 제19081호, 2022. 12. 13., 일부개정]

제16조(현역병입영)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,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(軍)별·적성별로 입영할 사람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.

③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되어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이 다른 시·군·구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도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·군·구에서 입영하게 한다. 다만,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이 연기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0조(현역병의 모집)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18세 이상으로서 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거쳐 육군·해군 또는 공군의 현역병으로 선발할 수 있다. 이 경우 병무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체력검사·면접·필기·실기 등의 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. 이 경우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 취소를 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.

제22조(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)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 예비역으로 소집될 사람을 거주지별 필요인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.

② 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한 사람이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현역 복무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.

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 또는 제65조제3항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을 예비역에 편입된 날부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하여야 한다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

지원 조례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4조(상해보험료의 지원)
-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체결을 위한 상해보험료 비용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격기준: 마포구 군복무 청년 × 상해보험 보장에 따른 1인 보험료
- 비용추계기간: 2024년~2028년(5개년)
- 주요내용: 상해사망(후유장해), 질병사망(후유장해), 입원일당 등을 보장으로 하는 상해보험료 산정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해	당	없	음		
세입	○						
	소계(a)						
세출	○홍보비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	○상해보험료	60,000	60,000	60,000	60,000	60,000	300,000
	소계(b)	61,500	61,500	61,500	61,500	61,500	307,500
□ 총 비용(a-b)		-61,500	-61,500	-61,500	-61,500	-61,500	-307,5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자체 수입	지방세수입	61,500	61,500	61,500	61,500

5. 덧붙이는 의견

- 상해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며 보장내용의 변경 또는 보험사의 수가 변경에 따라 매년 (재)가입시 예산의 변동 가능성이 있음

6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고용협력과 이효진
연 락 처	02-3153-8642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2022년 병무통계연보(발행 병무청)에 따라 서울시 군복무 청년 대비 마포구 군복무 청년 인원 산정 : 매해 약 1,000명×1.5년(군복무기간) = **약 1,500명**
- 상해사망(후유장해), 질병사망(후유장해), 입원일당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 1인 보험료 산정 : **약 40천원**
-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예산 : **1,500명 × 40천원 = 60,000천원**